

	<b>교직원연수심의위원회 운영지침</b>	규정번호	5-0-22
		제정일자	2013.10.01
		개정일자	2021.06.01
		개정번호	Ver.1
		총페이지	2

제정 2013년 10월 1일

개정 2021년 6월 1일

**제1조(목적)** 이 지침은 교직원 국내외 연수에 관한 규칙 제10조에 의한 교직원연수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구성과 임기)** ① 위원회는 당연직으로 행정처장과 부처장으로 구성하며, 위원회의 위원장은 당연직으로 기획처장이 한다.

②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당해 보직기간으로 한다.

**제3조(기능)** 위원회는 교직원의 국내외 연수에 관한 제반사항을 심의한다.

**제4조(위원장 등의 직무)**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하고 대표한다.

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간사 1인을 둘 수 있으며 위원장이 위촉한다.

**제5조(회의 및 의결)** ① 위원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가부 동수일 때에 결정권을 가진다.

**제6조(위원의 제척)** ① 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 대상자가 되는 경우 심의에서 제척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이 직간접적으로 해당 안건의 심의와 관련하여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면 위원장은 직권으로 제척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.

**제7조(보고 및 시행)** ①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며, 위원장이 총장의 결재를 받은 후 보관한다.

② 위원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.

**제8조(기타)** 위원회 운영 지침에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위원회 결정에 따른다.

**제9조(지침의 제정 및 개정)** 지침의 개정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결재를 받아 개정한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13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.
- (2) (경과조치) 이 지침 시행 이전에 시행한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 지침에 의한 것으로 본다.

**부 칙**

- (1) (시행일) 이 지침은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.